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9일,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8. 2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9. 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경제적·정치적 이익’ 및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애 앞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란, 폭동, 테러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는 범죄이므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정보는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내란 등 조장 정보를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할 실익이 낮을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